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경기도 대응방안

양희택*·정희경**

Summary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발달장애인법은 총 7장 44조로 2014년 4월 21일 최종 의결됨.
- 동법의 주된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개인 지원계획 수립 규정을 담고 있는 것임.

□ 발달장애인법의 주요 특징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앙과 지역(광역·기초 지자체)설치, 운영해야 함.
- 센터의 직원은 조사권을 가지고 있음.
- 센터의 장은 격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보호를 할 수 있음(7일 이내).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은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음.

□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와의 연계성 검토

- 경기도의 발달장애인지원조례(안)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이 법령보다 축소, 법령에 명시된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체계구축과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의 지원 조항이 부재함.

□ 경기도의 대응방안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수탁기관의 자격규정의 정리 필요.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역할 정립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의 수정 필요
- 발달장애 관련 관계자들의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에 대한 사전논의 필요

*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kicsos@ggwf.or.kr/031-267-9345,

**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heekc9912@ggwf.or.kr/031-267-9346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후 발달장애인법으로 표기)은 총 7장 44조로 2014년 4월 21일 최종 의결됨. 동 법은 2012년 2월 결성된 발달장애인법 제정추진연대¹⁾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였고, 지난 2012년 5월 제19대 국회 제1호 법안(김정록 의원 대표)으로 발의 되었으나, 제정되지 못하였음. 이후 2013년 12월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과 병합심의(7회)를 거쳐 의결됨. 발효는 공포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후 2015년 11월 말임.
- 동법의 주된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 지원 체계 구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그 외에도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체계 및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서비스 제공 및 전담 조사제(검/경찰)실시를 통한 권익보호강화(조사권 부여: 담당경찰, 센터장)와 발달장애 조기진단 지원 및 치료 재활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 지원 강화임.
- 또한, 부모 교육 및 심리지원, 가족 휴식지원을 통한 발달장애 가족의 부담경감(교육, 상담, 휴식지원,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방안)과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설치 및 운영 더 나아가, 중앙 및 지역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와 인권옹호 인프라 체계 구축(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설치해야 하며, 필요성이 인정될 시에는 둘이상의 시·군은 통합하여 설치 가능)을 명시하고 있음.

2. 발달장애인법의 주요 특징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함(발달장애인법 제5장 제 33조).
- 발달장애인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중앙(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후 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다는 것임(동법 제33조).
- 중앙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 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1)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4개단체

있음. 중앙센터의 경우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한 9가지 호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지역센터의 경우,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의 총 10가지 호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음.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유기등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음(발달장애인법, 제 16조 2항).

-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함(발달장애인법제, 제 16조 1항).
-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총 16가지 호에 해당되는 관련 기관 종사자의 경우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동 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발달장애인법, 제 15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쉼터(위기발달장애인쉼터)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격리 보호할 수 있음(7일 이내).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음(발달장애인법 제 41조 2항).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위탁은 기존 사회복지 분야에서 적용하였던 수탁기관 자격으로 비영리(민간)단체(법인)가 아닌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되어있음(발달장애인법 제 41조 2항, 4항)

-
- 또한, 동 센터의 운영 수탁기관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8, 9조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발달장애인법 제 41조 2항), 더 나아가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계좌관리의 점검을 동 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3.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와의 연계성 검토

- 2013년 5월 경기도의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됨. 주된 내용으로는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발달장애인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복지단체의 보호 육성 및 확충.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으로 총5장 23조로 구성됨.
- 경기도의 발달장애인지원조례(안)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이 법령보다 축소되어 있으며, 상위법에 나와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의 지원 조항이 없음.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부분이 없으며, 수립이후의 진행경과보고 및 실적에 대한 평가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발달장애인법의 주요 내용인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맞춤 지원 체계 구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에 대한 부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법령의 예, 자기결정권, 성년후견인 이용, 자조모임,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제, 현장조사, 보호조치).
- 광역지자체(경기도)와 기초지자체(시·군·구)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임.

4. 경기도 대응방안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의 자격규정인 공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함. 지자체(광역, 기초), 발달장애인들과의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원센터, 동 기관에 위탁 운영될 수 있는 제

반 기관이나 역할(위기발달장애인쉼터, 장애아동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이 매우 광범위하고, 강력하기에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발달장애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역할 정립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즉, 기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상당부분 겹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각각의 센터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전 영역의 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역할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맞춤 지원 체계 구축과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
 - 경기도의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을 실시(개인별지원계획수립, 부모 상담 운영 및 상담자 양성사업,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기술 프로그램 개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상담서비스의 구체화 등)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운영, 평가 매뉴얼작업
 - 시·군의 발달장애인 수를 조사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한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 광역지자체의 센터 설치 및 운영은 의무이지만 시·군은 필요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그 외 법령의 각 장에 명시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작업
-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의 수정 필요. 조례의 위계적 특성을 적용할 것과 발달장애인법에서 명기한 조항에 지자체(광역, 기초)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발달장애 관련 관계자(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현장전문가, 학계 등)들의 사전 논의가 필요함. 법령이 발효되는 2015년 말 전까지 동 법의 효율적인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관계자들의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할 것임. 즉,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 준비를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 위원회 구축 및 운영 등을 들 수 있음.

G-Welfare Focus(GWF)는 주요 정책고객 및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복지와 관련된 환경변화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과급효과 및 대응방향을 제언하는 비정기적 발간물입니다.